

오리배합사료가격 평균 3.5% 인하

오리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3.5% 내외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6일 축협사료를 필두로 배합사료가격을 인하한데 이어 일반배합사료업체들도 23일을 전후해 배합사료가격이 인하됐다.

이번에 배합사료 가격이 내린 것은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안정과 환율인하에 따른 인하요인이 발생된데다 최근 양축농가들의 경영이 축산물소비 위축으로 크게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사별 인하폭을 보면 축협사료의 경우 4.2% 내외에서 가격이 인하돼 가장 높은 폭으로 가격이 내렸고 일반배합사료 업체들은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3.8%까지 가격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일부 축협사료의 경우 포당 가격은 육용오리 7천6백원으로 Kg당 304원선이였다. 또 현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S사료의 경우 육용오리가 종전에 비해 3.5%내린 포당 7천1백원선, 어린오리는 7천5백50원선으로 Kg당 284원,302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S사료의 경우 육용오리 사료 8천6백원,어린오리 9천400원선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사료가격 인하로 당협회가 조사한 일부사료회사들의 육용오리 포당 평균가격은 7,921원으로 Kg당 3백16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어린오리사료의 포당가격은 8천4백38원으로 Kg당3백38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오리사료가격 인하는 타축종에 비해 적은폭으로 인하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육,부화,유통업계 연대한 조직화 활발

오리업계에 오리를 사육하는 사육농가,부화장,유통업자등이 조직화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조직화는 연구회나 영농조합법인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조성된 가칭 오리사육연구회는 부화장과 사육농가가 등 15명정도가 연대하여 연구회조직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은 사료의 공동생산판매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오리사육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경기도 중부북부지역의 사육농가,유통업자등 10여명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사육관련 생산재의 공동구매와 생산물의 공동판매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목적아래 법인설립이 추진중에 있다.

또 충북의 사육농가, 부화장등 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오리영농조합법인 역시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이 영농조합역시 오리사육에서 유통까지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아래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와같이 오리업계에 사육 부화 유통을 연대한 조직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조직체계가 현재의 개별경영체제보다 생산비를 더욱 절감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다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현재 오리업계의 호경기가 지나고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사육농가, 부화장등 사육업계의 피해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역시 이같은 조직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영농조합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될 문제가 있어 현재의 사업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목적인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영농조합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화장 생산성 크게 악화 새끼오리 공급차질

여름철 들어 부화장들의 생산성이 크게 악화돼 새끼오리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부화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 부화장들의 산란율, 부화율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청도 한부화장에 따르면 최근 부화율이 크게 저하돼 봄철에 비해 새끼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충청도의 한유수 부화장의 경우도 종전에 비해 부화율이 약 7%정도 줄어들어 입란대비 새끼생산량이 57%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화장 한관계자는 여름철은 산란율과 부화율이 동시에 나빠져 언제든지 8월과 9월의 새끼생산량이 가장줄어드는 시기라고 밝히면서 종오리의 주령별로 그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종오리가 노화된 경우 여름철 부화율 및 산란율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월과 9월의 새끼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오리사육농가들의 새끼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화장 종오리 개량을 위한 PS 도입 활발

오리업 경기가 크게 호전되면서 최근 새끼오리를 생산하는 각 부화장들이 품질좋은 새끼오리 공급 및 종오리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PS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충남 천안에 소재한 화천부화장의 경우 지난 5월 영국의 체리베리사로부터 4천2백수의 종자용 PS를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충북 진천의 주원농산역시 최근 체리베리사로부터 1천2백60수의 종자용 PS를 도입했다.

또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미르네 농산은 프랑스의 그리므드사로부터 이달말 자체사용할 종자용 PS 5천3백수 이외에 전남 영암의 대명부화장 등 2개 부화장에서 각각 도입요청한 2천수를 포함하여 총 9,600 수의 종자용 PS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같이 새끼오리를 공급하는 부화장들이 PS도입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최근 경기호전에 따른 부화장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좋아졌고 품질 좋은 새끼생산 공급과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대형부화장이외에 소규모 부화장들이 종자용 PS를 이용한 새끼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향후 국내 오리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상업용 육용오리 도입 주목

상업용 육용오리 교잡종이 국내서는 처음으로 대량도입돼 육용오리 소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미르농산은 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물덕 10,560 수의 상업용 오리를 도입하여 검역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이 육용오리는 페킨종오리와 마스코비종오리를 교잡하여 생산된 일명 물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육용오리는 후대번식이 안되는 반면 페킨종 오리의 빠른성장과 마스코비종 오리의 지방이 적은 장점이 있어 암컷은 65일령에 생체 3.8Kg 수컷은 4Kg내외로 성장하고 사료요구율은 2.8 내외이고 지방이 적은 특징이 있고 초생추의 도입가격은 수당 2천원선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육용오리 품종은 기존 페킨종 오리에 비해 지방이 적고 육량생산이 많아 유럽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질을 중요시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부합되어 국내 오리고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지 주목된다.

중부북부지역 수해피해 심각 오리출하에도 영향

지난6일 중부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지역 오리사육농가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오리업계 관계자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파주,양주지역의 일부농가에서 수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파주의 진병선씨 농장은 저수지 범람으로 4주령된 육용오리 2천

수가 물에 떠내려 갔고 축사1동이 붕괴되어 2천수의 오리가 폐사했다. 또 인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이학근씨 농장역시 4주령된 육용오리 3천수가 물에 떠내려 갔고 축사 한동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서울 오금동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한 농가역시 5천수를 사육하는 축사 전체가 물에 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양주지역의 농가들은 축사바닥에 물이 차는 정도에 그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지역 유원지 일대 상당수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데다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려 오리고기 소비위축에 따른 사육농가의 육용오리 출하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수해로 이 지역 오리사육농가들은 수해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 이외에 간접적인 피해역시 클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 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배합사료 가격 추가인하 단행

배합사료 가격이 지난 7월20일을 전후로 인하된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4-5% 추가인하됐다.

축종별 인하폭은 축협사료의 경우 양계3% 양돈4%, 낙농5.5%, 비육우 6% 기타 3%이며 일반사료업체의 경우는 양계3.7%, 양돈3.8%, 낙농4.2%, 비육우 4.4% 기타 3.5%이다.

이에 IMF체제이후 36% 이상 인상됐던 배합사료 가격은 4차례에 걸쳐 가격인하가 단행되므로써 IMF 이전보다 일반사료업체 공급사료는 15.8%, 축협사료는 15.1% 인상된 수준에 머물게 됐다.

법률상식/축산물 가공처리법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등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도축업 2.집유업 3.축산물 가공업 4.축산물보관업 5.축산물운반업 6.축산물판매업 7.용기등 제조업 8.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1.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지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조거부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1.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의 신고) 1.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제조업의 신고를 한자가 용기 등을 제조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영업의 승계) 1.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매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

세법에 의한 유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등) 1.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4항,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4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이상 휴업하는 경우

6)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향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계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징금처분) 1.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대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건강진단) 1.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생교육) 1.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과 자체검사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 또는 자체검사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을 한후 또는 검사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실시비용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토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의 도살 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으러 함에 있어서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영업자는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여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1.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축산물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동결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2) 유해 유해물질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하지아니한

자가 처리 가공 또는 제조한 것

2.시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동결한 때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의 취소·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협 회 소 식

민원처리

종오리 피해 확인 질의회신

당협회는 지난 8월13일 전남 나주 이병선 회원에게 민원이 접수된 종오리 피해에 대한 확인서와 코리아덕 부화장이 회신해준 종오리 산란율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회신했다.

당협회는 지난 2월3일 이 회원으로부터 종오리 1천3백80수가 인근 대한사료 하치장에서 사육중인 개가 사육장에 들어와 산란중인 4백55수의 암컷종오리를 물어죽여 큰 피해를 봤다는 민원을 접수한바 있어 이에대한 확인서를 회신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당협회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종오리의 생산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코리아덕과 미르네농산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이중 코리아덕이 회신한 소견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 회원에게 회신했다.

호우피해에 대한 현황자료 조사 제출

당협회는 지난5일 중부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피해상황과 이에따른 피해액을 과주군청에 제출했다.

이는 이번호우에 의한 정부의 피해보상시 오리가격 산출시 정확한 유통가격을 알려 피해를 본 농가에 좀더 정확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기위해 취해졌다.

또한 당협회는 이번호우로 사육중인 새끼등이 떠내려가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부화장이 새끼오리 공급가격을 일시적으로 내려서 공급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해당 부화장에 협조요청했다.

정책건의 및 질의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 연장건의 및 질의

당협회는 지난7월21일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중단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의서와 중국산 가금육이 언제 해제될 수 있을지에 대